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 상반기 이용인 보수교육 자료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지침변경)

1. 서비스 갱신, 변경 온라인 신청 가능!
2. 본인부담금 과다 납입시 반환가능!
3. 이용자 의료기관 입원 시 60일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단 (기존 :30일)
4. 장보기서비스 활동지원사단독가능 (단,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구입 후 설명해야함.)

▣ 본인부담금

이용자 카드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와있으며, 매달 25일 이전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 12개월분까지 한번에 입금 가능하며, 판정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생성제한

이용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바우처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 남게 되는데, 이 시간이 쌓여 매 월 생성되는 시간을 넘게 되면 다음달 부터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와 ARS (1644-9911)에서 바우처에서 남은 시간과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문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월 4회발송)

▣ 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

-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용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신고

이용인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 급여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던 남은 바우처는 다음달 1일에 소멸되며, 본인부담금 잔액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작성하였던 계좌로 중단 처리 후 60일 이내에 환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사유>>

- 장애인 거주시설에입소했을 때
-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경우
- 외국에서 60일 이상 머물러 있게 된 경우
- 60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된 경우
-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같은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이용인이 중단을 신청할 때
- 이용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과 중단은 본인만 가능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엔 사실상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여김.

■ 중단된 활동지원서비스 재시작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사유가 해결된 경우에는 다시 종합조사를받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중단 되기 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용인은 중단 사유가 해결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서비스재시작 신청을 합니다.

- (신청기한) 사유해결일부터 30일까지
- (증빙서류) 퇴소확인서, 퇴원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사유가해결된 경우에는 다시 종합조사를받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중단 되기 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용인은 중단 사유가 해결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서비스재시작 신청을 합니다.

- (신청기한) 사유해결일부터 30일까지
- (증빙서류) 퇴소확인서, 퇴원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바우처 부정사용의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결제를 하는 것.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것처럼 한 후 서비스 한 시간보다 그 이상으로 서비스결제를 하는 것.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인이 아닌 다른 이용인의카드로 결제를 하거나,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가 아닌 다른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팔아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 이용인(보호자)과 활동지원사가 서로 논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가져가지는 것.
(※ 이용인 가족이 다른 이용인의활동지원사로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계약을 맺은 이용인이아니고 가족인 이용인을돌보는 경우는 서로 논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활동지원사가 이용인의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서비스결제를 하는 것.

※ 이용인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①또는 ②에 해당하고,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여제공에필요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의 이용인 카드 일시적소지를 예외적으로 허용

- ①이용인이 지적·자폐성 장애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 ②이용인이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동의를 얻은 후 허용

※ 부정사용자는 이상결제 모니터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들어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각 문의처에 해주세요)

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내용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활동

* 문의처 : 1588-1519

* 관련웹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지원주기 : 수시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내용 : 만6세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가능(중복이용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http://www.broso.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 지원대상

훈련생은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o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o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는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o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있는 사업체

④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o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o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 선정기준

o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을 따르며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o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o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참고:‘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

o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희기관에 애정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